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등〉

- 최혁진·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71호)
- 이현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49호)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16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5
1.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	5
2.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14

I. 제안경위

1. 최혁진·김동아의원안

가. 제 안 자 : 최혁진·김동아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11. 10.

다. 회 부 일 : 2025. 11. 11.

2. 이헌승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12. 5.

다. 회 부 일 : 2025. 12. 8.

3. 민병덕의원안

가. 제 안 자 : 민병덕의원 등 17인

나. 제 안 일 : 2025. 12. 17.

다. 회 부 일 : 2025.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최혁진·김동아의원안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물품 등의 공동구매·이용·판매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여 조합원들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 및 조합의 인가 등 육성정책과 감독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 육성정책은 성격상 규제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규제가 아닌 진흥 성격의 생활협동조합 발전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조합의 성장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소관을 기업의 보호·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조합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등).

2. 이헌승의원안

현행법은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및 경쟁정책 수립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생활협동조합의 육성·활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생활협동조합은 비영리성을 기반으로 하나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하여 물류, 유통, 매장 운영 등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혁신, 경영 개선, 시장 대응 등 기업적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 이러한 특성은 규제 중심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보다는 기업,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성장·육성 기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기에 더 적합함.

이에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생협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생활협동조합 중 친환경 소비·유통 등 농업·식품 분야와 밀접하게 연계된 부분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관련 정책 지원체계를 보유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협동조합의 특성과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한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81조의2 등).

3. 민병덕의원안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 등의 공동구

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 업무와 인가 등 감독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규제업무라는 점에서 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 수행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주무부처를 기업의 육성정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

□ 개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안 제9조의2등).

현행	최혁진·김동아의원안	이현승의원안	민병덕의원안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u>공정거래위원회</u> 는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은----- ----- ----- ----- ----- ----- ----- -----.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은----- ----- ----- ----- ----- ----- ----- -----.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은----- ----- ----- ----- ----- ----- ----- -----.
제21조(설립인가 등) ①·② (생략) ③ 시·도지사 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	제21조(설립인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제21조(설립인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제21조(설립인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현행	최혁진·김동아의원안	이헌승의원안	민병덕의원안
는 즉시 <u>공정거래위원회</u>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에게----- -----.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에게----- -----.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에게-----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정관) ① (생략)	제23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제23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제23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u>공정거래위원회</u> 는 표준정관례(標準定款例)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은----- ----- ----- ----- -----.	②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은----- ----- ----- ----- -----.	②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은-----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이하 생략 -			

□ 현행법¹⁾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라함)은 조합원(소비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임.

- 현재, 생협은 지역소비자 참여하고, 친환경 농수산물 직거래 등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을 하는 지역·단체 생협, 주민·의료인이 참여하여 보건예방 사업 등을 하는 의료생협과, 교수·직원·학생 등이 참여하여 식당·서점 등을 운영하는 대학생협으로 구분됨.

- 2024년도 기준으로 생협은 254개에 이르며 조합원 수는 183만 명을 넘어서 있는 상태²⁾이고, 5개 이상의 생협이 모여 설립하는 연합회는 총 7개로 아이쿱, 한살림 등 지역생협 관련 4개, 대학생협 관련 1개, 의료생협 관련 2개가 활동 중³⁾임.

□ 생협은 1980년대부터 조직되어 직거래운동, 안전한 먹거리 찾기 등의 활동을 해 왔으며, 1998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상세 현황>

(단위: 개, 명, 억원)

분야별 생협 수				조합원 수	총 공급액	총 출자금
지역·단체	의료	대학	계			
119	102	33	254	1,838,428	9,761	2,601

* 직장과 단체는 지역생협에 포함하여 통계 작성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상세 현황>

(단위: 개)

구분	연합회명	설립연도	회원조합 수
지역	아이쿱생협연합회	1997	14
	한살림생협연합회	1986	27
	두레생협연합회	1997	24
	행복중심생협연합회*	1989	10
의료	한국소비자생협연합회	2011	53
	한국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2019	9
대학	대학생협연합회	1989	33

*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누적된 적자로 파산절차 진행(파산 선고, 채권자집회 소집 등) 중이며, 연합회 소속 회원조합은 독자운영(5개), 파산(4개), 소속 연합회 변경(1개) 등 대응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법 제정 당시의 생협의 주무부처는 재정경제부였으나, 2008년도에 소비자정책 종합·조정 기능이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생협의 업무도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됨.
- 생협의 설립인가·관리·감독은 시·도에서 수행하고,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관리·감독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함⁴⁾.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준사법기관이고, 소비자정책에 있어서도 소비자피해방지를 중점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성격상 소비자가 운영하는 공동체 기업모델인 생협의 주무부처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에 개정안은 생협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생협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생협의 연도별 상세 현황에 따르면, 조합원 수는 증가추세이나, 생협 수 및 총 공급액은 감소추세로 최근 성장이 더딘 상황으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설립인가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설립인가 등) ①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2조(설립인가 등) ① 전국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합회 또는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로 보임.

- 조합원 수는 2024년 기준 1,838 천명으로, 조합 수가 최대치였던 2016년(1,537 천명) 대비 19.6%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인가된 조합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여 2024년 254개로, 최대치를 달성하였던 2016년(678개)의 37.5%에 불과⁵⁾하고, 총 공급액은 2024년 9,761억원으로, 최대치를 달성하였던 2015년(1조 2,291억원) 대비 20.6% 감소하는 등 등락을 반복하나 감소추세에 있음.

<생협 연도별 상세 현황>

(단위: 개, 천명, 억원)

연도	생협 수	지역·단체 조합 수	조합원 수	총 공급액	총 출자금
2015	671	168	1,538	12,291	1,410
2016	678	175	1,537	11,620	1,920
2017	588	178	1,616	10,867	1,645
2018	487	191	1,560	8,091	1,544
2019	456	190	1,569	10,718	1,982
2020	431	202	1,578	7,684	1,886
2021	414	183	1,719	9,180	2,433
2022	401	196	1,758	9,667	2,631
2023	328	171	1,825	9,473	2,673
2024	254	119	1,838	9,761	2,60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5)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불법의료기관 단속 등으로 의료생협 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전체 생협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생협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생협의 경우 지난 40여년간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와 도농 교류를 통해 유기농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음에도,

최근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급성장에 따른 시장 경쟁 심화와 더불어 소비자의 가격부담⁶⁾ 등의 이유로 생협의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경영 기반이 악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친환경농산물 판매장별 매출액 추이(인증품)>

(단위: 억원)

구분	업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친환경 전문업체	친환경전문점 ²⁾	1,758	2,370	2,320	1,605	1,742	1,536	1,500
	생협 ¹⁾	3,997	4,161	3,627	2,875	3,139	2,726	2,300
	소계	5,755	6,551	6,147	4,480	4,882	4,263	3,800
대형 유통업체	대형마트	2,154	2,034	2,136	1,642	1,500	1,911	1,418
	백화점 ²⁾	1,014	699	629	429	437	366	366
	SSM	2,247	2,396	1,971	910	823	1,011	1,031
	소계	5,415	5,131	4,736	2,981	2,639	3,306	2,817
농협 등	로컬푸드직매장	235	432	521	714	897	401	426
	농협	250	255	1,011	70	66	54	46
	소계	535	687	1,532	784	965	455	474
온라인					491	1,457	1,832	1,874
합계		11,705	12,369	12,415	8,736	10,143	9,858	9,045

· 주 1 : 2018년부터 '우리 생협'을 생협에서 친환경전문점으로 변경함에 따라 데이터 추이에 변화 발생

· 주 2 : 2020년부터 식품매장을 보유한 백화점만 포함하였으며,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 중인 백화점의 식품매장인 '킴스클럽'은 SSM으로 집계함

(자료: 2024년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인식 및 판매장 현황 조사(농림축산식품부, 2024. 9.))

6)

<소비자 인식 및 구매/비구매 이유>

구분	주요 데이터	비고
최근 1년 내 구매 경험률	76.8%	인식 유지, 구매력 문제 심화
구매 이유	안전(39.5%) > 건강(31.1%) > 환경(13.6%)	공익적 소비 성향 뚜렷
비구매 이유 1위	가격이 비싸서(65.1%)	시장만으로 가격 장벽 해소 어려움

(자료: (보도자료) 2024년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인식 및 판매장 현황조사(농림축산식품부))

□ 또한, 현행법⁷⁾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협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를 반영한 제1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전계획(2024 ~ 2026년)을 수립·시행 추진 중에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협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이 없고⁸⁾, 생협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세제 지원 등 육성 정책도 부재함에 따라 생협 등은 소관부처의 이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마케팅 및 수출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⁹⁾.

□ 따라서, 생협은 2018년 8월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¹⁰⁾됨에 따라 소관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7)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2021년 생협법 개정, 2022. 6월 시행)

8) 특수거래정책과에서 담당하나 전담인력은 사무관 0.5명 수준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9)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10)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

하여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육성·지원 정책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정책의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생협의 주무부처가 될 경우, 수익모델 발굴 등에 집중되어 소비자(조합원) 권익보호 측면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기업적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는 등 당초 법 제정취지¹¹⁾에 부합하는 건전한 생협 육성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단체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 생협에 대한 적극적 금융·

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대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삭제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1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용역·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자립·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 지원 또는 타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 강화 등 사회연대경제의 성장 촉진에는 일부 한계가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기술개발·인력·홍보·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보유하고 있어 생협의 발전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수용하는 의견이고,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5개 생협연합회¹²⁾에서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는 의견¹³⁾임.

□ 참고로, 농수산물과 식품을 생산·공급하는 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면서 관련 조합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으로 하는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¹⁴⁾.

12)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2025.10.30.) ※ 생협법상 7개의 생협연합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파산절차 진행 중

13)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주재 회의에서 주무부처 이관에 찬성(2025. 12. 4.)

14) 의안번호 제2214254호, 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생협에 대한 지원은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친환경농어업법」을 통해서도 추진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법률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자료: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2.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친환경농산물 또는 농수산물 등의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생협 또는 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 업무를 관련 정책 지원체계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이헌승의원안 제81조의2 신설, 민병덕의원안 제81조제8항 신설).

현 행	이헌승의원안	민병덕의원안
제81조(감독 및 권한의 위탁) ① (생략) ② ~ ⑦ (생략) <신설>	제81조(감독 및 권한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u>제81조의2(특정 분야 생협 등에 대한 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친환경생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설립 목적 및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u>	제81조(감독 및 권한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u>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합·연합회와 전국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u>

현 행	이헌승의원안	민병덕의원안
	<u>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친환경생협등의 구체적인 기준,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친환경농산물 또는 농·수산물 등의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생협 또는 연합회의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식품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이헌승의원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¹⁵⁾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생협 또는 연합회의 설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

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수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할 수 있도록 함.

- 민병덕의원안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합·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은 농식품 등의 분야와 연계된 생활협동조합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개정안 논의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주무 부처장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의 구분없이 그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¹⁶⁾ 및 개정안은 규율대상에 따라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

16) 제21조(설립인가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설립인가 등) ①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2조(설립인가 등) ① **전국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합회 또는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1조(감독 및 권한의 위탁) ① **시·도지사**(설립인가를 한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전국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독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을 생협은 시·도지사, 연합회·전국연합회는 주무 부처(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가 수행하도록 달리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친환경농산물 또는 농수산물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 분야의 조합 등에 한해 그 업무의 위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¹⁷⁾은 친환경농수산물 및 식품 판매를 위주로 하는 ‘지역협동조합’과 그 성격과 역할이 상이한 ‘대학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필요성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상 규율대상별 인가 및 관리·감독권자를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17) 제4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4.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 그 밖에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중소기업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생협에 대한 유기적 지원 및 일관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서 타 기관으로의 위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15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주요 지원사업 현황

- **(중소기업 정책자금) 6개 분야**(총 4조 4,413억원)
 - * 신성장기반 자금(친환경·저탄소 기업 등, 12,851억원), 밸류체인안정화 자금(단기 생산자금,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등, 1,985억원)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3개 분야**(총 3조 3,620억원)
 - *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 소상공인, 12,20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위기·취약 소상공인, 13,500억원), 성장기반자금(성장 유망 소상공인, 7,920억원)
- **(소상공인 지원사업) 7개 분야 총 26개 사업**(총 1조 3,410억원)
 - * 경영안정바우처(소상공인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바우처 지급, 5,790억원),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787억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349억원) 등
- **(중소기업 기술개발) 총 11개 사업**(총 2조 2,000억원)
 -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중소기업 대상, 4,942억원), 민관공동 기술사업화(중소기업 대상, 1,299억원),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연구인력 채용 지원, 341억원) 등
- **(중소기업 마케팅지원) 총 4개 사업**(총 141.7억원, 2,050개사 지원)
 - * 온라인판로 종합지원(300개사), 오프라인 판로 지원(300개사),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1,200개사), 마케팅 역량 강화 매칭지원(250개사)
- **(중·소상공인 수출지원) 총 16개 사업**(6,867억원)
 - * 수출바우처(14개 분야 수출지원 서비스, 1,502억원),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대기업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 마케팅 등 지원, 306억원) 등

(통합공고 기준, 자료: 2026. 1. 29. 중소벤처기업부)